

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환급 지침

('20.3.23, 심사정책과)

□ 시행 배경

-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(법률 제17073호, 시행 : 2020.3.23.)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

* '20.3.1. ~ 6.30. 수입신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 70% 감면 (100만원 한도)

< 감면 내용 >

품 목	내 용
자동차 (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가·나·다목)	개별소비세액의 70% 감면 (감면한도 100만원)

* '20.3.1.~6.30. 수입신고분 : 납세신고서에 감면 부호(E109401) 기재로 개소세 감면

□ 환급 지침

① (1구간) '20.3.1 이전 수입신고 분

- (환급대상) '20.3.1. 기준으로 보세구역, 하치장, 직매장 등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, '20.6.30.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
- (신청* 기한) '20.3.23. ~ '20.6.30.

*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

- (환급대상 확인서류) 재고물품 확인서, 판매확인서(세금계산서, 자동차등록증), 수입신고서 등

* 재고물품 확인서, 판매확인서 등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(현품 확인 생략)하고, 동 증명서류로 자동차 보유내역·판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품 확인

② (2구간) '20.3.1 ~ '20.3.22 수입신고 분

- (환급대상)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
- (신청* 기한) '20.3.23. ~ '20.4.25.

* 붙임 환급신청서 서식에 의함

- (환급대상 확인서류)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

③ (3구간) '20.3.23 ~ '20.6.30. 수입신고분

- (환급대상)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
- (환급대상 확인서류) 감면부호가 기재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신고 정정승인서

환급 신청자

-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

환급 한도

- 개별소비세(100만원), 교육세(30만원), 부가가치세(13만원)

신청번호:

처리기간

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

7일

1. 환급신청인

상 호	대표자명	사업자등록번호	주 소(전화번호)
		주민등록번호	

2. 환급신청 내역

수입신고 번호	신고 수리 년 월 일	란번호	품명·규 격	수량	금액	환급세액			
						개별소비세	교육세	부가가치세	합계

3. 환급금 수령 은행계좌

은 행 명	계좌개설인	계 좌 번 호

「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」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세 관 장 귀하

※ 첨부서류 : 1. 재고물품 확인서, 판매확인서 등 증빙서류
2. 통장 사본